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6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연구기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의 바이오·의료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바이오·의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의료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여 2016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나. 최근 증가하는 바이오·의료 기업들의 입주공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릉일대 사유지 활용 및 민간건물 임차를 통한 추가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확대 되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10,058 m^2)/ 동대문구 회기로 117-3, 舊 농촌경제연구원
- 구)경희대학교 이과대학(1,890 m^2) / 동대문구 회기로 1-5
- 거산프라자 신관(3,562 m^2)/ 성북구 종암동 30번지
- BT-IT 융합센터(2,986 m^2) /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2, 舊 서울국방벤처센터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20.7.~2023.7.)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안) : 2020년 예산편성 중 ※'19년 편성예산 : 3,75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공모)
- 주요 위탁사무
 -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기업 발굴·유치
 - 바이오 의료 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홍릉일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 바이오·의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기업 입주공간, 장비 등 시설 설치·관리, 홍보, 기타 정책사업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시 바이오 의료산업 거점인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시설의 입주공간 추가 조성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확대하게 되어¹⁾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추가 공간 조성

- 서울시는 생물학·의공학 분야의 과학기술이 집적화되어 있는 ‘홍릉 일대²⁾’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에 서울바이오 허브 3개 동(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을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운영 중에 있음.

1)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에서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 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는 민간위탁 동의를 새로 받도록 하고 있음.

2) 홍릉일대는 서울바이오허브를 중심으로 생물학·의공학 등 기초연구에 특화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순수기초과학 양성기관인 고등과학원(KIAS), 국립산림과학원(NIoFS) 등과 대학병원이 다수 입지해 있고, 고려대, 경희대 등 9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서울바이오허브에는 바이오·의료분야 혁신 창업기업 31개사가 입주해 있고, 입주경쟁률이 평균 4:1에 달할 정도로 입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 현황 〉

구분	시설	규모	입주공간	개관
① 산업지원동	컨설팅룸 컨퍼런스홀	지하1/지상4 3,729㎡	20개	'17.10월
② 연구실험동	공용연구장 비·실험실	지하1/지상5 3,216㎡	20개	'19.4월
③ 지역열린동	과학도서관 다목적홀	지하2/지상4 3,113㎡	40개	'19.11월 (예정)

- 이에 서울시는 경희대학교 구 이과대학(3개층), 거산프라자 신관(지하2층 ~ 지상6층), BT-IT 융합센터(지하1층~지상5층)에 신규 입주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임.
- 2020년도 예산은 56억 3,222만원이 편성된 바, 입주공간 조성비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의 본격 운영에 맞춰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음.
-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수탁협약(2016.7.25 ~ 2020.7.24)을 체결하여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바이오·의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홍릉 바이오 주요시설 현황 〉



구 분		규 모(㎡)		주요 특징	입주대상
		입주공간(실)			
합 계		연면적 57,064㎡, 입주공간 280실			
1단계 인프라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 ('19년 완료)	건물 3개동 연면적 10,058㎡ 80실(평균 6~38㎡)	컨퍼런스홀·상담존 연구장비·실험실 과학도서관	제약, 의료기기 등 5년이하 창업기업	
민간 임차	경희대 구 이과대학 ('20.7. 개관)	3개층 /1,890㎡ 20실(최대 70㎡)	기업 전용실험실 +사무공간 복합제공	바이오분야 창업 10년 이내 성장기업	
	고려대 앞 거산프라자 ('20.7. 개관)	지하2 지상6/3,562㎡ 30실(최대 100㎡)	바이오 공유공간 소규모 제품제작 공간		
2단계 인프라	BT-IT융합센터 ('20.11. 준공)	지하1,지상5/2,986㎡ 30실(평균 40㎡)	헬스케어 시제품제작실, 리빙랩 등	BT-IT융합 헬스케어 분야 5년이하 창업기업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21.12. 준공)	지하1,지상8/14,018㎡ 70실(검토 중)	GLP 지원시설 글로벌엑셀러레이터 입주공간 등	허브 성장기업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21년 착공예정)	지하3,지상8/24,550㎡ 50실(검토 중)	의료기기 GLP 시설, 주거공간	의료기기 기업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동의안은 홍릉일대 바이오·의료 지원시설 확충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확대되어 기존 위탁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 위탁 추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현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7월에 만료³⁾될 예정인 바 신규 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되었음.
- 주요 위탁사무는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기업 발굴·유치 ▶바이오·의료기업 성장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 입주공간, 장비 등 시설 설치·관리와 홍보 등임.
- 홍콩 내 연구기관과 대학병원의 기술, 연구, 임상 역량을 결집시키고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를 조성·운영하는 사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라 판단됨.
- 다만, 재위탁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관리해 온 이 사업의 경제성·효과성·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실적 등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동시 상정되지

3) 시설형 민간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고, 현재 위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는 3년(2016.7.25.~2019.7.24.) 위탁 이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2019.7.25.~2020.7.24.)을 한 바 있음.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존 위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 시의회 동의 대상

- 동의 대상 :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예산안 의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시행규칙 §2②)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 시행규칙 §2②

예산편성(주관부서)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